지방정부 노동감독 시대,
지방정부의 산재예방 역할과 협력 방안 토론회

2026.11.19 (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발표

목표를 세우고, 길목을 찾고, 계획을 만드는 지방정부
- **최진일** 충남노동건강인권센터 새움터 대표

지방정부 산업재해 예방정책, 노동·시민사회 참여와 협력이 필요하다.
- **양은정** 건강한 노동세상 사무국장

토론

류지호 의정부이주노동자센터 센터장
곽이경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김준호 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장

주최: 건강한노동세상,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 (사)김용균재단, 노동건강연대,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충남노동건강인권센터 새움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국회의원

지방정부 산재예방 역할과 협력 방안 국회 토론회 자료집

지방정부 노동감독 시대, 지방정부의 산재예방 역할과 협력 방안 토론회

2026년 11월 19일 목요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좌장 손진우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

발제1 목표를 세우고, 길목을 찾고, 계획을 만드는 지방정부

최진일 충남노동건강인권센터 새움터 대표

발제2 지방정부 산업재해 예방정책, 노동시민사회 참여와 협력이 필요하다.

양은정 건강한 노동세상 사무국장

토론1 류지호 의정부이주노동자센터 센터장

토론2 곽이경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토론3 김준호 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장

공동주최

건강한노동세상,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 (사)김용균재단, 노동건강연대,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충남노동건강인권센터 새움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국회의원

글 싣는 순서

인사말
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 ……04
김태선 국회의원 ……07
이용우 국회의원 ……10

발제 1 목표를 세우고, 길목을 찾고, 계획을 만드는 지방정부
최진일 ¦ 충남노동건강인권센터 새움터 대표 ……15

발제 2 지방정부 산업재해 예방정책, 노동시민사회 참여와 협력이 필요하다.
양은정 ¦ 건강한 노동세상 사무국장……31

토론 1
류지호 ¦ 의정부이주노동자센터 센터장 ……46

토론 2
곽이경 ¦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51

토론 3
김준호 ¦ 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장 ……59

토론회 진행 순서

좌장: 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

14:00~14:10	개회사 및 인사말
14:10~15:00	발제
	목표를 세우고, 길목을 찾고, 계획을 만드는 지방정부 **최진일** 충남노동건강인권센터 새움터 대표 **지방정부 산업재해 예방정책, 노동·시민사회 참여와 협력이 필요하다.** **양은정** 건강한노동세상 양은정 사무국장
15:00~16:00	토론
토론 1	의정부이주노동자센터 **류지호** 대표
토론 2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 **곽이경** 노동안전보건국장
토론 3	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 **김준호** 산재예방지원과장
전체 토론	

인 / 사 / 말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
손진우

달라지는 노동감독 시대의 변화를 함께 고민합시다.

노동감독 행정에 큰 변화가 시작됩니다.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이 오는 12월 8일 시행되면,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노동감독 권한 일부가 시·도지사에게 위임됩니다. 그동안 지방정부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원 사업에 주력해 왔다면, 이제는 법 집행으로서의 노동감독 역할까지 맡게 된 것입니다. 이는 지역 일터의 안전을 지키는 데 있어 지방정부의 위상과 책임이 근본적으로 달라졌음을 뜻합니다.

권한 위임이 추진된 배경에는 중앙정부 단독 감독의 구조적 한계가 있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매년 감독하는 사업장은 약 5만 4천 곳으로 전체의 2.6%에 그쳐, 산재가 집중되는 소규모·영세 사업장까지 촘촘히 살피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입법 과정에서 지방 위임을 두고 찬반 논란도 일었으나, 이제는 법 제정을 넘어 제도가 현장에 실질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설계해야 할 시점입니다.

물론 현장의 우려가 적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지방정부는 그동안 산재예방 지원 사업을 수행해 왔지만, 노동감독 경험과 전문 인력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반면, 지역 산업 구조와 소규모 사업장의 실태를 가장 가까이에서 파악하고, 인허가·행정지원 등 기존 지방행정 수단과 감독을 연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방정부만의 강점과 기대 또한 분명합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지방정부 노동감독의 고유한 역할과 작동 과정을 정립하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이는 지방정부만의 숙제가 아니라 중앙정부와 국회, 노동계와 시민사회 모두가 함께 풀어야 할 우리 사회의 과제입니다. 오늘 국회 토론회 「지방정부 노동감독 시대, 지방정부의 산재예방 역할과 협력 방안」은 바로 그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첫 번째 발제는 지방정부가 명확한 목표 아래 현장에 닿는 길목을 찾아 계획을 수립하는 전략과, 감독과 지원을 하나로 묶는 조직 재편 방안을 다룹니다. 두 번째 발제는 정책의 수립부터 이행, 평가까

지 노동조합과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어떻게 실질적으로 협력하고 참여할 것인지를 짚습니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의정부이주노동자센터 류지호 센터장님과 민주노총 곽이경 노동안전보건국장님으로부터 노동계·시민사회의 현실적 우려와 이주노동자 등 현장의 고민을 듣고, 고용노동부 김준호 산재예방지원과장님과 함께 산재예방 지원과 노동감독의 연계 등 중앙·지방정부 협력 과제를 모색할 예정입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귀한 자리를 공동으로 주최해 주신 김태선 의원님, 이용우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발제를 맡아 주신 최진일 대표님, 양은정 사무국장님, 토론에 참여해 주신 류지호 센터장님, 곽이경 국장님, 김준호 과장님을 비롯해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함께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전국 각지에서 분투하는 노동안전보건단체 모두를 대신하여, 오늘의 논의가 '일하다 죽지 않는 지역'을 만드는 실질적인 첫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 / 사 / 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태선

안녕하십니까.
노동자의 도시, 더불어민주당 울산 동구 국회의원 김태선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지방정부 노동감독 시대, 지방정부의 산재예방 역할과 협력 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뜻깊은 자리를 함께 마련해주신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3년 동안 노동감독은 중앙정부가 전담해 왔습니다. 하지만 오는 12월 8일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이 시행되면, 지방정부도 노동감독의 일부를 담당할 수 있게 됩니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커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2024년 산재보험 유족급여가 승인된 사고사망자는 827명입니다. 이 가운데 10명 중 7명 이상이 30명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던 노동자였습니다. 작은 사업장일수록 안전관리 여건이 취약한 만큼,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려면 준비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지방정부가 노동감독과 산재예방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갖춘 조직과 인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아울러 지역의 산업구조와 재해 발생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예방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감독과 예방사업이 긴밀하게 연계되어야 합니다. 현장에서 위험요인을 발견하더라도 실제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특히 시설 개선에 필요한 예산이나 전문성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에는 기술적·재정적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관계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오늘 토론회가 지방정부의 새로운 역할을 함께 고민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현장의 다양한 경험과 의견을 바탕으로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저 역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지방정부가 산재예방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고, 오늘 논의된 내용이 실제 현장의 안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입법과 정책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 / 사 / 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용우

안녕하십니까?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인천 서해구을 국회의원 이용우입니다.

〈지방정부 노동감독 시대, 지방정부의 산재예방 역할과 협력 방안〉 국회토론회를 개최하는 마음이 무겁습니다.

귀중한 논의의 장을 준비해 주신 건강한노동세상, 한국노동안전보건연

구소 외 모든 주최 단위들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발표를 맡아주신 최진일 충남노동건강인권센터 새움터 대표님, 양은정 건강한 노동세상 사무국장님과, 토론자로 나서주신 류지호 의정부이주노동자센터장님, 곽이경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님, 김준호 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일터에서 노동자가 다치고 목숨을 잃는 비극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영세사업장과 소규모 건설현장, 고령·이주노동자 등 기존의 산업재해 예방정책이 충분히 닿지 못하는 곳에서는 위험을 발견하는 것부터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노력과 함께 지역의 산업과 노동환경을 잘 아는 지방정부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는 12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시행을 앞두고 지방정부의 노동감독 권한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다만 노동감독 권한을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것이 그 자체로 산업재해를 줄이는 해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지키고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하는 일은 국가의 본질적 책무임에도 오늘 발제문이 보여 주듯 지방정부의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지방정부는 산업안전 영역에서 직접 감독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산재예방 사업도 대부분 중간지원조직에 위탁해 왔습니다. 산재예방 업무를 다른 일과 겸하는 담당자 한두 명이 맡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일반행정직 순환보직으로는 감독 전문성이 쌓이기 어렵습니다. 지역마

다 인력과 예산, 의지가 다르니 같은 일터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어느 지역에 있느냐에 따라 감독의 질이 달라지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위임 기준이 사업장 규모 하나뿐이고 위험도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도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지자체의 준비 정도에 좌우되어서는 안 됩니다. 행정적 역량과 철저한 감독 체질이 준비되지 않은 지방정부로 권한만 덜컥 넘기는 것은, 자칫 규제 완화의 신호로 작동하거나 중앙정부가 마땅히 져야 할 산재예방의 국가 책임을 외주화하고 방기하는 참담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노동감독 권한의 지방 이양이 중앙정부의 책임을 덜어내는 명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가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최종적인 책임을 지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감독 인력과 전문성을 충분히 확보하는 일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지방정부가 감독의 한 축을 맡더라도 중앙정부는 인력과 예산, 데이터, 전문성을 충분히 지원하고 최종 책임을 져야 합니다.

감독의 독립성과 일관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도 갖춰야 합니다. 노동감독은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시정조치와 수사 등 공권력을 행사하는 업무입니다. 감독관의 높은 전문성과 독립성이 요구되며, 어느 지역에서 일하든 노동자가 동등한 수준의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지방정부마다 인력과 재정 여건이 다른 상황에서 감독 권한의 분산이 오히려 감독의 전문성을 떨어뜨리거나 지역별 노동자 보호 수준의 격차로 이어질 가능성을 경계해야 합니다.

오늘 토론회가 지방정부의 노동감독 권한 확대를 당연한 전제로 삼기보

다, 그 효과와 한계를 냉정하게 살피고 중앙정부의 감독 책임을 분명히 하면서 지방정부가 실질적으로 산업재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발제 내용 중 감독과 지원이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내용, 지방정부도 목표를 세우고 행정의 길목을 찾아 계획을 만드는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 내용에도 공감합니다.

저 역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노동감독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지키고, 법이 시행을 앞둔 만큼 지방정부 노동감독 위임이 부실한 준비로 감독의 공백이나 혼선을 낳지 않도록 국회에서 끝까지 살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제 1

목표를 세우고, 길목을 찾고, 계획을 만드는 지방정부

최진일
충남노동건강인권센터 새움터 대표

목표를 세우고, 길목을 찾고, 계획을 만드는 지방정부

최진일 ¦ 충남노동건강인권센터 새움터 대표

0. 들어가며

2026년은 지방정부가 산재예방 사업을 수행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감독의 주체가 되는 첫 해다. 지원과 위탁 중심으로 일해 온 지방정부가 직접 현장에 들어가서 판단하고 책임져야 하는 행정으로 넘어간다. 지방정부의 감독행정이 본격화되는 2027년을 앞둔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두가지이다.

첫째, 지방정부는 자기만의 전략을 가져야 하고, 그 전략을 세우려면 실질적인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여기서 전략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다. 어떤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에 닿는 길목이 어디이며, 그 길목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계산한 계획이다. 거버넌스는 그 계산을 함께 하는 자리여야 한다.

둘째, 지방정부의 체질이 바뀌어야 한다. 해 보지 않은 감독행정을 기존의 지원행정에 기계적으로 붙이면 곳곳에서 문제가 생긴다. 감독과 지원을 어떻게 유기적으로 결합할 것인지, 나아가 기존의 행정 역량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1. 달라지는 판

○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이 2026. 12. 8. 시행되면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감독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된다. 지방정부의 인력 충원은 2027년부터 시작된다.

○ 2026년 지중해사업(지역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 지원사업)과 안전한 일터 지킴이가 시작되었다.

○ 위임 구조와 법령의 세부 쟁점은 이 발제의 중심이 아니다. 다만 위임 기준이 사업장 규모(30인) 하나뿐이고 위험도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은 짚어 둔다. 이 문제는 새 기준을 만들자는 주장보다, 지방정부가 스스로 사각지대를 찾아 접근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요구로 이어져야 한다.

2. 지금 지방정부의 산재예방은 어떤 모습인가?

2-1. 직접 해본 적이 없다.

지방정부는 지금까지 산업안전 영역에서 직접 감독을 수행해 본적이 없다. 많은 지방정부가 산재예방을 위한 조례를 가지고 있고 나름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지만 상담, 지원, 캠페인 등의 형태에만 머물러 있다. 더구나 대부분의 지방정부는 이러한 지원사업들도 '직접' 수행해보지 않았다. 기존의 사업들도 '지원센터', '권익센터' 등의 중간지원조직에 위탁하는 형식으로 수행되었다. 2026년 시작된 지중해사업의 운영기관도 대부분 테크노파크나 경영자총협회 같은 사용자단체와 지원기관이고, 실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은 안전협회와 보건협회 같은 기관이다. 이로 인해 담당 공무원의 역량과 운영기관의 성격에 따라 사업의 질이 크게 달라지고, 그 차

이는 소규모 사업장 현황을 얼마나 파악하고 설계에 들어가느냐에서 먼저 드러난다.

2-2. 험난한 길목 찾기

2026년 지역 사업 현장을 점검하며 확인한 장면들이다.

○ **신고로 찾아간 지붕 추락 현장**: 지킴이가 신고를 받고 지붕 공사 현장을 방문해 기술지도를 했지만 사업주가 협조하지 않았다. 기술지도에는 강제력이 없다. 협조하지 않으면 지도는 거기서 끝난다.

○ **지원 장비를 둘러싼 부담**: 고소작업대 같은 장비를 지원하면 그 장비로 사고가 났을 때의 책임이 부담이 된다. 이 사업은 결국 고소작업대를 지원 항목에서 뺐다. 현장에 가장 필요한 지원을 책임 문제 때문에 포기한 셈이다.

○ **태양광 공사**: 막상 가 보니 고소작업이 없는 현장도 많았다. 또 공사업체가 정해져 있어서 같은 업체의 현장만 반복해서 지원받는 문제도 생각해 봐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 **축사**: 사업 홍보는 축사 중심으로만 이루어지고 있었다. 돈사는 전염병 때문에 외부인 출입이 막혀서 접근하지 못했다.

이 장면들이 공통으로 보여 주는 것이 있다. 문제는 무엇을 지원할 것인가보다 어디로 들어갈 것인가다. 공사가 어디서 언제 벌어지는지, 행정이 어떻게 거기에 가서 닿는지 알지 못하면 기술지도도, 장비 지원도 우연에 맡기게 되고, 어떤 준비를 얼마나 해야 하는지 계산이 서지 않는다.

2-3. 조직과 인력은 지역마다 다르고, 대부분 얇다

○ 대부분의 지방정부에서 산재예방 업무는 다른 일을 겸하는 담당자 한 두 명이 맡고 있다. 그나마 감독권 이양을 앞두고 노동감독을 전담하는 부서를 준비하는 지방정부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다행이다.

○ 서울시는 일자리노동국 아래에 노동감독과를 두는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순증 정원 66명 가운데 노동감독 인력이 51명이다(2026. 9. 17. 발표, 시의회 의결 여부는 확인 중).

○ 경기도는 「지방노동감독관 운영 및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2026. 10. 12. 공포, 12. 8. 시행). 직무교육, 직무 독립성, 신변 보호, 사무공간과 장비 지원을 담았다.

○ 이처럼 앞서가는 곳이 있는 반면, 아직 세부 계획과 목표 없이 부서 개편 구상 단계에 있는 곳이 많다. 일부 지자체는 노동정책위원회나 산재예방위원회가 조례 단계에서 부결되거나 회의 없이 폐지되었다.

2-4. 데이터: 지역이 자기 위험을 모른다

2024년 업무상 사고사망자 827명 중 30인 미만 사업장이 591명(71.5%)이다. 그러나 공식 연보에는 지역별·규모별 교차 통계가 없다. 지방정부가 어느 규모의 사업장에서 어떤 재해가 나는지를 스스로 파악하지 않으면, 사각지대는 계속 사각지대로 남는다. 지방정부가 산재예방을 위한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산업재해와 관련한 데이터의 고도화도 필수적인 조건이다. 노동부–근로복지공단의 다양한 데이터를 지방정부가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산재 현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하고, 지방정부의 자체적인 행정데이터도 산재예방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정비되어야 한다.

3. 핵심 1 – 무엇을 목표로 할 것인가?

3-1. 전략의 순서

지방정부의 산재예방 전략은 네 가지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

1. **목표**: 무엇을 줄이거나 바꾸려는가
2. **길목**: 그 대상에게 가장 확실하게 닿을 수 있는 행정의 접점이 어디인가
3. **수단**: 그 길목에서 감독, 지도, 지원을 어떻게 짜 맞출 것인가
4. **근거**: 이 계획을 실행할 인력, 예산, 중앙의 지원이 있는가

여기서 먼저 분명히 하고 싶은 점이 있다. **모든 지방정부가 반드시 중대재해 감축 같은 어려운 목표를 내걸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고령 노동자의 검진 수검률, 휴게시설 설치율, 특정 공종의 추락 위험 요인 제거 같은 목표도 얼마든지 좋은 목표다. 중요한 것은 목표가 명확하다는 것, 그리고 그 목표에 이르는 정책 경로를 찾았다는 것이다. 경로를 찾을 때 지방정부는 새로운 권한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 지방정부가 이미 가진 행정의 경험과 권한, 즉 인허가, 등록, 관리·감독, 보조금, 면허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감독행정과 연계 가능한 지방정부 행정권한의 사례]

분야	지방정부가 가진 권한	근거 조문
태양광	발전설비용량 3천kW 이하 발전사업 허가(시·도지사). 허가 때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며, 개발행위허가·농지전용·산지전용·도로점용 등 21종 인허가를 협의로 묶어 처리	전기사업법 제7조, 제7조의3
태양광	전기설비 설치공사 시작 전 신고 접수(시·도지사)	전기사업법 제61조 제3항,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 제2항
태양광	높이 5미터를 넘는 태양광 설비의 공작물 축조신고 접수 및 관리대장 작성(시장·군수·구청장)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 제11호

분야	지방정부가 가진 권한	근거 조문
태양광	태양광 시공업체(전기공사업) 등록(시·도지사)	전기공사업법 제4조
건축	건축허가(시장·군수·구청장). 허가 한 건에 개발행위·농지·산지·도로·배출시설 등 23종 인허가를 함께 처리	건축법 제11조 제1항, 제5항
건축	착공신고 접수. 공사감리자·시공자 서명, 도급계약서 사본 첨부	건축법 제21조
건축	건축허가 업무를 전자정보처리 시스템(건축행정시스템)으로 처리	건축법 제32조
소방	건축허가·사용승인 때 소방본부장·소방서장 동의 필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위험물	위험물 제조소·저장소·취급소 설치허가, 완공검사, 사용정지(시·도지사). 소방본부장·소방서장 출입·검사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 제9조, 제12조, 제22조
고압가스	고압가스 제조·저장·판매 허가(시장·군수·구청장)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
화학물질	화학물질 관리 조례 제정(안전관리 계획, 위원회, 행정·재정 지원, 배출저감계획 확인·지원 등),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수립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 제23조의4
식품	영업 허가·신고·등록(시장·군수·구청장), 허가에 조건 부과, 영업소 출입·검사,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 접수	식품위생법 제37조, 제22조, 제88조
축산	축산업 허가·가축사육업 등록(시장·군수·구청장), 축사 개선비용 지원	축산법 제22조
인력사무소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시장·군수·구청장). 등록 사업자는 구인자의 허가·신고·등록 여부를 확인할 의무	직업안정법 제19조
공동주택	관리주체 보고 요구, 관리사무소 출입 조사·검사, 요청 없어도 감사 가능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아래 세 가지 예는 목표가 다르면 길목과 수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3-2. 예 ① 소규모 건설공사의 추락재해를 줄이겠다면

길목 찾기. 지붕공사나 태양광 설치, 축사 공사 같은 소규모 공사는 사고가 나기 전까지 노동행정의 눈에 잘 띄지 않는다. 그러나 이 공사들은 대

부분 다른 행정을 거친다.

○ 태양광 발전은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라 규모별로 중앙 또는 시·도지사의 발전사업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과정에서 주민 의견수렴 절차도 있다. 공사가 열린다는 사실이 행정에 미리 들어온다는 뜻이다.
○ 건축 공사는 건축 인허가와 착공신고를 거친다.
○ 축사도 건축 인허가와 축산 관련 허가·등록 정보가 있다.

즉 **언제, 어디서, 누가 공사를 하는지**를 기존 행정 시스템에서 읽어 낼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길목이다. 대구시의 2026년 지중해사업(지역 중대재해 사각지대 해소사업)사업계획서는 5인 미만 영세사업장과 10억 원 미만 초소규모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삼았다. 계획서는 아파트 외벽 도색, 지붕, 태양광 공사 같은 소규모 공사를 대상으로 지목하고, 발전사업 허가자료를 활용해 위험을 줄이며 인력사무소를 연계한 공사 현장에 집중 지도를 하겠다고 밝혔다. 기술지도 목표는 초소규모 건설현장 728개소(2,187회)다. 행정자료를 길목으로 삼겠다는 방향이 계획서에 드러난 드문 사례다.

수단 설계. 길목을 찾았으면 무엇을 할지를 정해야 한다.

○ 감독관을 현장에 보내 감독을 할 것인가
○ 전문 기술지도 인력을 파견할 것인가
○ 고소작업대 같은 장비를 지원할 것인가. 앞서 본 것처럼 지원 장비의 사고 책임과 운영 문제를 함께 설계해야 한다.

한 걸음 더: 인허가 행정과의 연계. 길목을 충분히 파악했다면, 지방정부가 이미 쥐고 있는 인허가권과 안전보건 조치를 연결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새로운 신고제나 허가제를 만들자는 주장이 아니다.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건축 허가와 착공신고 같은 기존 절차에서 추락방호 계획, 기술지도 이수, 안전보건 조치 이행 확인을 허가의 조건으로 붙이거나 협의 사항으로 점검하는 방식이다. 이미 행정이 사업자를 만나는 자리를 노동안전의 접점으로 쓰는 것이다. 물론 인허가에 붙이는 조건은 그 허가의 목적과 관련이 있어야 하고 법령의 근거가 필요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지원 역량이다. 조건을 붙이려면 사업자가 그 조건을 맞출 수 있도록 기술지도 인력과 장비, 비용 지원이 먼저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준비 없이 조건만 붙이면 허가 지연과 서류 부담으로 돌아오고 현장은 달라지지 않는다.

3-3. 예 ② 고령 노동자의 건강관리에 집중하겠다면

2024년 산재통계에서 60세 이상 산업재해 사망자는 1,107명으로 전체의 약 52.8%다. 업무상 질병에 걸린 노동자 가운데서는 60세 이상이 1만 6,423명으로 63.8%를 차지한다. 사고와 질병 모두에서 고령 노동자가 절반을 훌쩍 넘는다. 고령 노동자의 건강은 이제 일부 업종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노동시장 전체의 과제다. 그러나 막연히 고령 노동자를 지원하겠다고 하면 길목이 보이지 않는다. 핵심적인 업종을 먼저 찾아야 한다.

길목 찾기. 예를 들어 공동주택의 경비·청소 노동자는 고령 노동자가 많이 일하는 대표적인 일자리다. 그리고 지방정부는 이 영역에 이미 행정권한이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를 요구하고 관리사무소에 출입해 조사·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이 감독권을 노동자 건강과 연결하면 접근로가 생긴다. 이 밖에도 건물 청소·시설관리 용역처럼 고령 노동자가 모여 있는 업종, 지방정부가 직접 운영하거나 재정을 지원하는 일자리, 지방정부가 면허나 보조금을 쥐고 있는 업종이 후보가 될 수 있다.

수단 설계. 건강검진, 휴게시설, 근무시간에 대한 감독과 지원방안을 함께 설계해야 한다. 안전보건공단의 건강디딤돌 사업은 50인 미만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진단 비용을 지원한다. 2026년 사업 안내(공단 산업보건실, 2025. 12. 30.)에 따르면 특수건강진단은 30인 미만 사업장 100%, 30\~50인 미만 90%,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90%, 건설일용직은 원청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100%를 지원한다. 휴게시설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에 설치·관리 의무가 있으며, 이를 어기면 과태료 대상이다. 감독이 지켜야 할 기준과, 그 기준을 맞출 수 있게 돕는 지원을 패키지로 설계해야 한다. 건강디딤돌 사업의 예산이 얼마나 있는지, 부족한 부분을 지방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지도 미리 검토해야 한다.

미리 생각해야 할 반응. 이런 정책을 강하게 펼치면 사용자가 고령 노동자 고용 자체를 꺼릴 수 있다. 감독이 고령자 일자리를 줄이는 결과를 낳는다면 정책의 목표에 어긋난다. 그래서 고령자 고용 유지 여부를 정책의 성과 지표에 함께 넣고, 비용 부담이 사용자와 입주민에게 고스란히 전가되지 않도록 지원을 설계해야 한다.

3-4. 예 ③ 이주노동자의 산재예방을 목표로 한다면

앞의 대구 계획서는 건설 일용직과 이주노동자가 모이는 인력사무소를 연계 지점으로 삼았다. 모이는 곳에 들어가는 방식은 길목 찾기의 좋은 예다. 이주노동자가 지역에 얼마나 어디에 모여 있는지는 지방정부가 이미 가진 외국인 주민 통계와 외국인 지원 시설 정보로 파악할 수 있다. 인천시 계획서는 외국인 주민 91,425명이 5개 구에 86.7% 집중되어 있다고 밝히고 있다. 집중된 곳에는 집중된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 다만, 지역별로 이주노동자들이 많이 일하는 사업장의 종류는 무척 다양한 양상을 보일 것이다. 소규모사업장이라는 점에서는 비슷하겠지만 지역에 따라 농업, 어업 등에 집중되는 경우들도 있으며 농촌의 경우는 계절 이주노동자들도

많이 유입되고 있다. 이러한 지역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주노동자 산재예방대책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이 외국어 안전교육이다. 이를 제대로 감독-지원과 연계시키려면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감독에 있어서도 단순히 안전교육 서명지에 서명되어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주노동자들이 교육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필요하면 다국어 안전교육을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한 지역의 인프라도 준비되어야 한다. 이주노동자 안전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강사, 다국어 실시간 통역 시스템 등이 그것이다.

물론, 이주노동자 안전대책이 교육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대부분의 교육내용이 기본적인 권리를 교육하기 보다는 안전수칙만을 강조한다는 한계도 극복해야 할 지점이다. 앞서 언급한 계절이주노동자들의 경우 지방정부 또는 지역 농협 등 위탁기관이 이주노동자들의 노동력을 공급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관리가 어려운 소규모 현장이 아니라 사전에 공급주체, 관리주체를 분명히 하고 그 주체들의 안전보건관리 의무를 강력하게 감독하는 것 역시 새로운 감독행정이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교육의 내용 역시 열악한 현장상황에서 지킬 수 없는 수칙을 강조하기 전에 위험작업에 대한 거부권, 위험상황을 신고할 권리를 먼저 알려주고 지방정부가 이들의 요청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준비를 갖추는 것이 더욱 직접적인 산재예방 행정의 모습일 것이다.

4. 핵심① 거버넌스는 계획을 세우는 단위여야 한다

4-1. 느슨한 협의체로는 계획을 만들 수 없다

앞의 세 가지 예에서 공통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있다. 목표를 정하고 길목을 찾는 일은 한 부서가 혼자 할 수 없다. 길목을 아는 곳은 인허가 부서이고, 지원 역량을 아는 곳은 현장 지원기관이며, 예산을 가진 곳은 재정부서이고, 현장의 위험을 아는 곳은 노동자와 노동조합이다.

지방정부의 산재예방 전략을 위한 거버넌스는 의견을 듣는 자문위원회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단위**여야 한다. 이 단위가 계획을 세우려면 다음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배치할 수 있어야 한다.

1. **정책의 길목을 찾는 행정:** 인허가, 등록, 관리·감독 정보를 읽어 낼 수 있는 부서의 참여
2. **지역이 가진 역량:** 현재 이 지역에서 기술지도와 검진을 소화할 수 있는 인력과 기관의 규모
3. **지방정부가 쓸 수 있는 예산**
4. **중앙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지원의 종류와 규모:** 안전보건공단 등의 사업

4-2. 예 ① 소규모 공사의 추락재해 계획을 세운다면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운다는 것은 아래 질문에 숫자로 답한다는 뜻이다.

- ○ 이런 소규모 공사가 우리 지역에서 1년에 몇 건이나 벌어지는가?
- ○ 감독에서 그치지 않고 지원까지 한다면 파견할 수 있는 기술지도 인력이 몇 명인가?
- ○ 지원할 수 있는 고소작업대나 크레인 같은 장비는 어느 정도이고, 임대료로 쓸 수 있는 예산은 얼마인가?
- ○ 안전보건공단 등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은 어느 범위까지인가?

이 계산을 해 보았더니 인허가 대상 공사 대부분을 지원할 수 있다는 답이 나왔다면, 그때는 인허가 단계에서 안전보건 조치를 조건으로 검토하는 방안으로 나아갈 수 있다. 반대로 지원해 줄 역량이 안 되는 상황에서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 의무화한다면 역량부족으로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사업장에는 지원을 할수 있어야 한다.

4-3. 예 ② 유해화학물질을 쓰는 소규모 제조업을 감독한다면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소규모 제조업 사업장을 감독하면 특수건강진단 실시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만일 사업장이 진단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할까.

○ 사업주가 특수건강진단을 하지 않으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 위반이 되고, 제175조 제4항 제7호에 따라 **근로자 1명당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 과태료** 대상이 된다. 상한이 1천만원이고, 소규모 사업장에는 감경 규정이 있어 실제 부과액은 이보다 낮을 수 있다.

○ 과태료만 부과하고 끝낼 수 있을까. 소규모 사업주가 비용, 진단기관 접근성, 절차를 몰라서 못 한 것이라면 다음 해에도 같은 결과가 반복된다. 그래서 감독과 함께 건강디딤돌 같은 공단의 지원 사업에 연결해 사업주가 진단을 실제로 실시하도록 돕는 지원이 필요하다.

○ 이 연결을 계획으로 만들려면 다시 숫자가 필요하다. 우리 지역에 해당 사업장이 몇 곳인지, 공단의 지원으로 얼마나 소화되는지, 공단 예산으로 부족한 부분을 지방정부가 얼마나 채울 수 있는지, 지역의 특수건강진단기관이 그 물량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적발부터 지원 연결, 이행 확인, 재점검까지의 순서와 각 단계를 어느 부서가 맡는지를 한 장의 계획으로 그릴 수 있어야 한다.

4-4. 결론: 거버넌스의 일

지방정부의 산재예방 전략을 위한 거버넌스는 지역 차원의 합의와 더불어 실질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단위가 되어야 한다. 그 안에는 노동자 대표, 사용자 대표, 안전보건 전문가, 지역의 노동조합과 노안단체 등 산재예방을 둘러싼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가 필요하며, 이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어야 한다. 한편으로는 이들 주체들이 가진 역량과 인프라, 정보도 취합되어야 제대로 된 전략과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조금 더 나아가면 지역에서의 거버넌스는 그 아래에 구체적인 계획의 수립을 위한 사무국을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산재현황 및 인프라의 현황에 대한 통계적인 접근, 지원제도의 파악과 예산의 책정 등 구체적인 계획 수립을 위한 실무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단위가 있어야 거버넌스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5. 핵심 ② 지방정부의 체질이 바뀌어야 한다

5-1. 간접지원에서 직접 감독+지원으로

지원행정은 사업을 수행하고 협력 관계를 유지하며 건수와 예산 집행을 중심으로 움직인다. 더구나 그동안의 지방정부 행정은 대부분 이 역할을 운영기관/실행기관이라는 이름으로 위탁해 왔다. 반면 감독행정은 현장 조사와 판단, 재량, 지도와 제재, 독립성과 일관성을 중심으로 움직인다. 지방정부 행정의 체질개선 없이 두 가지를 기계적으로 붙이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 사업장에 지원과 감독이 각각 진행되는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 지원 과정에서 얻은 현장 정보가 감독계획에 쓰이지 못하고, 권고한 개선사항이 점검되지 않는다.

○ 감독에 대한 두려움이 기존의 지원사업 참여율 마저 떨어트릴 수 있다.

○ 감독을 규제와 적발로만 접근하면 이행능력이 없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대책이 없다.

특수건강진단 미실시를 적발한 부서와 건강디딤돌 연계를 담당하는 부서가 서로 다르고 정보를 주고받지 않는다면, 계획은 종이 위에서 끝난다. 인허가 조건으로 안전보건 조치를 보는 방안도 마찬가지다. 인허가 부서와 노동·안전 부서가 따로 움직이면 조건은 서류 한 장으로 남는다. 감독과 지원이 하나의 계획 안에서 연결되려면 부서 단위의 협력만으로는 부족하고, 일하는 방식과 조직 설계가 달라져야 한다.

5-2. 바뀌어야 할 것

○ 그동안의 지원행정은 위탁이 가능했지만 감독은 오롯이 지방정부의 몫이다. 지방정부가 직접 감독과 지원을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

○ 지방정부는 지원만 한다는 기존의 고정관념을 버리고 지도와 제재도 산재예방의 수단으로 사용해야 한다.

○ 감독, 지원, 컨설팅을 따로 두지 않고 하나의 흐름으로 묶어야 한다. 감독관에게는 적발만이 아니라 소규모 사업장에 맞는 재량과 역량이 필요하다.

○ 겸임이 아닌 전담이어야 하고, 순환이 아닌 축적이어야 한다. 서울연구원의 연구는 재정과 직렬 문제를 이유로 일반행정직 순환보직을 현실적인 선택으로 보았다. 그러나 순환보직은 감독 전문성이 쌓이지 못하는 구조이기도 하다.

○ 실패를 기록하는 조직이어야 한다. 지방정부 감독행정의 시작은 수많은 실패를 동반할 것이며, 이를 제대로 기록하고 평가하지 않으면 똑같은 실패를 반복하게 될 것이다.

6. 결론과 요약

1. **목표와 길목이 있는 전략을 세워주기를.** 기존 행정의 경험과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산재예방 전략과 자체 감독계획을 한 세트로 만들고, 거창한 목표가 아니어도 목표에 맞는 정책 경로를 찾아야 한다.
2. **계획을 수립하는 거버넌스가 되기를.** 길목을 아는 행정, 지역의 역량, 예산, 중앙의 지원을 한 테이블에서 종합하는 단위여야 한다. 각 주체가 참여하고 실제로 '일할 수 있는' 단위가 되어야 한다.
3. **기존 행정권한과 안전보건을 연결하되, 지원 준비와 함께.** 행정력에 안전보건 조치를 조건으로 검토하는 방안은 지원할 역량이 있다는 계산이 선 뒤에 가능하다. 지원할 수 없는 조건은 만들지 말고, 지원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서면 과감하게 검토해야 한다.
4. **감독과 지원을 한 흐름으로.** 적발한 사항은 지원으로 이어지고, 지원 과정의 현장 정보는 감독계획에 쓰여야 하며, 지도/권고한 사항의 이행 여부는 누군가 확인해야 한다.
5. **전담조직과 인력, 감독행정으로의 체질 전환을.** 겸임 대신 전담, 순환 대신 축적을 지향하고 실패를 기록하는 조직이 되어야 한다.

발제 2

지방 정부 산업재해 예방정책, 노동 · 시민사회 참여와 협력이 필요하다.

양은정

건강한 노동세상 사무국장

지방 정부 산업재해 예방정책, 노동·시민사회 참여와 협력이 필요하다.

양은정 ¦ 건강한 노동세상 사무국장

1. 들어가며

그동안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정책 수립과 감독은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지방정부의 산업재해 예방책임과 역할을 강화하는 제도적 변화가 이어지고 있다. 2021년 5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 지방정부의 산업재해 예방 책무와 예방 활동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2026년 4월 제정된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은 일정 범위에서 지방정부에 노동감독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처럼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기존의 예방사업과 새롭게 부여되는 감독 권한을 활용하여 어떠한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에서 이미 다양한 주체들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장 점검과 기술·재정지원, 교육, 노동자 건강관리 등의 예방 활동을 파악하고, 각각의 활동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노동조합과 노동안전보건단체 등 노동·시민사회는 이러한 예방 활동을 수행하는 주체인 동시에, 현장의 유해·위험요인과 노동자의 요구를 정책에 반

영하고 정책의 실행 과정과 성과를 감시·평가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전 과정에서 노동·시민사회의 실질적인 참여와 협력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2. 지금까지의 지방정부 산업재해 예방정책[1)2)]

1) 지방정부 산업재해 예방정책의 확대 과정

그동안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정책 수립과 집행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지방정부는 직접 고용한 노동자의 안전보건관리, 지방정부가 발주하는 건설공사 등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해 왔지만, 관할 지역의 민간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산업재해 예방정책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지방정부의 노동정책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산업재해 예방 역시 지방정부가 수행해야 할 정책 영역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2018년 3월 경기도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를 제정한 이후 서울과 경남 등 다른 지방정부에서도 관련 조례 제정이 확대되었다. 2021년 8월 기준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가운데 13곳에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관련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지방정부의 산업재해 예방책임이 법률에 명시되기 이전부터 일부 지역에서 자체적인 예방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왔음을 보여준다. 2021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지방정부의 산업재해 예방 책무와 자체 예방 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1)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국가적 산업안전보건 정책 집행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방안 연구」, 2020
2) 장안석, 전지인, 김은복, 「수도권 광역자치단체 산업재해 예방 조례 비교 및 정책 제언」, 2021

2) 조례를 기반으로 한 산업재해 예방정책과 사업의 확대

지방정부의 산업재해 예방 관련 조례는 지역별로 적용 대상과 사업 내용에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사업장 점검과 찌도, 교육 및 홍보,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심의·자문기구 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서울·경기·인천의 조례를 비교해 보더라도 세 지역 모두 이러한 기본적인 정책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있으나 조례의 적용 범위와 구체적인 사업에서는 차이가 있었다. 서울은 당시 공공영역을, 경기도는 민간영역을 주요 대상으로 하였으며, 인천은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을 모두 포함하는 등 지역에 따라 정책 대상과 추진 방식이 달랐다.

조례에는 산업재해 실태조사와 정책연구, 소규모 사업장 점검 및 지원, 안전보건교육과 홍보, 노동자 상담 및 법률지원 등 다양한 예방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지방정부는 이러한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지역의 산업구조와 노동환경에 따른 자체적인 산업재해 예방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각 지역에서는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노동계와 경영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심의·자문기구를 구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산업재해 예방정책이 지방정부의 개별적인 지원사업을 넘어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고 협력하는 방식으로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3) 지금까지의 산업재해 예방정책이 갖는 의의와 한계

지방정부의 산업재해 예방정책 확대는 그동안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

던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지역 차원의 역할을 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지역의 산업구조와 노동환경, 산업재해 발생 특성에 따라 예방정책을 수립하고, 기존의 정책과 제도에서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자와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조례 제정과 예방사업의 확대만으로 지방정부의 산업재해 예방정책이 충분한 실행체계를 갖추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2020년 당시 지방정부의 산업안전보건 관련 업무는 노동·일자리·재난·건설 등 여러 부서에 분산되어 있었고, 전담조직의 설치 여부와 사업 추진 여건에도 지역별 차이가 있었다. 또한 담당자의 잦은 인사이동과 전문성 부족 등 운영상의 어려움이 제기되었으며, 중앙정부의 지침 제공과 지속적인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확인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례에 기반한 정책 추진체계의 마련과 함께 전담조직과 인력, 예산의 확보가 주요 과제로 제기되어 왔다. 아울러 관계기관 협력체계와 심의·자문기구가 형식적인 운영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협력과 정책 추진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되어 왔다.

한편 지방정부의 산업재해 예방정책이 확대되고 다양한 사업과 협력체계가 운영되고 있는 만큼, 이제는 기존 예방사업이 실제로 어떠한 성과와 한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업의 추진실적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확인된 유해·위험요인이 실제 개선으로 이어졌는지, 개선 이후에도 안전보건조치가 지속되고 있는지, 각 기관의 사업이 어떠한 방식으로 연계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이러한 검토를 바탕으로 기존 예방사업의 한계를 보완하고, 지역 차원의 산업재해 예방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3. 앞으로의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

1) 지역의 유해·위험요인 발굴과 예방정책의 방향 설정

지방정부가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에서 어떠한 유해·위험요인이 존재하고, 어떠한 노동자와 사업장에 예방 활동이 필요한지 파악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의 산업구조와 노동환경, 산업재해 발생 현황 등을 분석하고 지속적인 실태조사와 현장조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 통계와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상 자료 등은 지역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와 직업성 질병의 유형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 업종에서 근골격계질환이 주요 문제로 확인된다면 해당 작업공정의 반복 작업과 중량물 취급 등의 위험요인을 조사하고, 이를 중심으로 점검과 개선 지원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장시간 노동과 야간·교대근무 등 노동조건과 관련된 건강 문제가 확인된다면 노동시간과 휴게시간 등에 대한 감독과 건강관리 지원을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발생하여 통계에 반영된 산업재해만으로 지역의 모든 위험을 파악할 수는 없다. 산업재해가 발생하였더라도 산업재해를 신청하지 않거나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며, 아직 산업재해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중대한 위험이 존재하는 작업과 사업장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기존 예방사업이 충분히 접근하지 못하는 노동자와 사업장은 관련 자료에서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지방정부는 산업재해 통계뿐만 아니라 관계기관의 사업장 점검과 기술지원 결과, 각종 안전보건지킴이의 현장 활동, 노동조합과 노동안전보건단체의 활동, 노동자의 상담과 제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존 자료에서 확인되는 위험에 대응하는 동시에, 자료에 드러나지 않는 위험과 정책의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것이다.

이러한 조사와 분석은 단순히 지역의 산업재해 현황을 파악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확인된 위험의 중대성과 발생 가능성, 노동자 건강에 미치는 영향, 기

존 정책의 접근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역에서 우선하여 대응할 과제를 선정하고, 그에 따른 감독과 예방사업의 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는 과정으로 이어져야 한다.

2)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분담과 협력

지방정부의 산업재해 예방책임과 역할이 확대되고 있지만, 이것이 중앙정부가 수행하고 있는 산업재해 예방정책과 사업을 지방정부가 동일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미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 등에서는 사업장 감독, 기술·재정 지원, 안전보건교육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지방정부 역시 자체적인 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정부는 새로운 사업을 확대하기에 앞서 중앙정부와 관계기관에서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각각의 권한과 역할은 무엇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담당할 업무를 구분하고, 기존 정책에서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는 영역을 보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지방정부의 노동감독 권한이 확대되는 경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감독 업무를 어떻게 분담하고 협력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지역에서 확인된 위험에 따라 감독의 대상과 방향을 설정하되, 지방정부가 직접 감독할 수 있는 사항과 고용노동부의 권한에 따라 조치해야 하는 사항을 구분하여 협력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동일한 사업장에 대한 점검과 감독, 지원이 반복되는 것 자체가 반드시 문제인 것은 아니다. 각 기관의 목적과 역할에 따라 반복적인 확인이나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활동이 서로 단절되지 않고, 앞선 활동에서 확인된 유해·위험요인과 개선 결과를 다음 조치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3) 기존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구조화와 연계

지역에서는 다양한 주체들이 사업장 점검과 기술지원, 컨설팅, 교육, 건강관리 등의 예방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각 사업은 수행기관에 따라 대상과 목적, 권한, 지원 내용 등에 차이가 있다. 사업장에서는 서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점검과 지원을 받더라도 각각의 사업이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확인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지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지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지방정부는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대상과 지원 내용, 각 기관의 역할과 권한 등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사업 간 연계가 필요한 부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사업장에서 확인된 유해·위험요인에 따라 필요한 점검과 교육, 기술·재정 지원, 건강관리 등을 연결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사업장 점검 과정에서 기계·설비의 위험이 확인되었다면 개선 방법에 대한 기술지원이나 필요한 재정지원 사업을 연계할 수 있을 것이다. 노동자의 근골격계 부담이나 건강 문제가 확인되었다면 관련 작업환경에 대한 개선 지원과 노동자 건강관리 사업을 함께 검토할 수 있다. 또한 법령 위반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거나 중대한 위험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권한을 가진 감독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연계는 개별 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을 지방정부가 모두 직접 수행하자는 의미가 아니다. 각 기관의 고유한 역할과 전문성을 유지하면서도 사업장과 노동자가 필요한 예방조치와 지원을 보다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노동자가 직접 제기한 위험이나 개선 요구도 관련 기관의 사업과 감독으로 연결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장에서 확인된 문제를 어떤 기관에 전달할 것인지, 이후 필요한 지원과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누가 확인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협력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지방정부는 지역의 다양한 예방사업을 파악하고 관계기관의 협력을 조정하는 역할을 통해,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예방 활동이 실질적인 현장 개선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사업주와 발주자로서 지방정부의 책임

지방정부의 산업재해 예방책임은 관할 지역의 민간 사업장에 대한 예방사업과 지원활동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지방정부는 직접 고용한 노동자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을 지는 동시에,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이 수행하거나 발주하는 사업에서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에서 수행하는 업무에도 다양한 유해·위험요인이 존재하며, 공공부문에서 발주하거나 위탁하는 사업에서도 산업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정부는 민간 사업장에 안전보건조치를 요구하고 지원하는 것과 함께, 자신이 직접 수행하거나 발주하는 사업에서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책임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특히 공공부문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노동자 참여 보장, 발주공사의 안전관리, 도급·위탁사업의 유해·위험요인 관리 등에서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넘어 적극적인 예방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이 산업재해 예방에 있어 모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 역시 중요한 과제이다.

4. 노동·시민사회의 참여와 협력

1) 지역 산업재해 예방정책에서 노동자 참여의 필요성

산업재해 예방에 있어 노동자의 참여는 중요한 원칙이다. 노동자는 실제 작업을 수행하는 당사자로서 작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위험요인과 안전보건조치의 문제를 직접 경험하고 있으며, 개선조치가 실제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

인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이유로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험성평가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노동자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

지방정부의 산업재해 예방정책에서도 이러한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특히 노동조합이 없거나 사업장 내 안전보건활동에 참여하기 어려운 노동자의 경우, 개별 사업장 차원에서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거나 개선을 요구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사업장 내 노동자 참여를 확대하는 것과 함께, 지역 차원의 산업재해 예방정책에서도 노동자의 의견과 요구가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노동조합과 노동안전보건단체 등 노동·시민사회의 참여는 노동자의 의견과 요구를 지역의 산업재해 예방정책에 반영하고, 정책의 실행과 성과를 감시·평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와 함께 지역에서 일하는 다양한 노동자들이 실제로 어떠한 노동환경과 위험에 놓여 있는지, 어떤 어려움과 요구를 가졌는지 지속적으로 파악할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 노동·시민사회의 활동과 더불어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폭넓게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과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2) 지역 예방정책의 방향과 우선순위 결정에 대한 참여

앞서 살펴본 것처럼 지방정부가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산업재해 발생 현황과 노동환경, 다양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조사와 분석이 필요하다. 그러나 어떠한 위험을 우선적으로 다루고, 어떤 사업장과 노동자를 예방정책의 대상으로 선정할 것인지는 단순히 통계와 조사 결과만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같은 지역에서도 업종과 사업장 규모, 노동자의 고용 형태와 노동조건에 따라 경험하는 위험이 다르며, 공식적인 자료에서 충분히 확인되지 않는 문제도 존

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의 예방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는 행정기관이 보유한 자료와 관계기관의 사업 결과뿐만 아니라 노동현장에서 확인되는 위험과 노동자의 요구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방정부는 지역의 산업재해 통계와 실태조사 결과, 기존 예방사업의 추진 현황 등을 노동·시민사회 및 관계기관과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예방정책의 대상과 우선순위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특정 업종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산업재해가 확인된다면 해당 업종에 대한 집중적인 예방사업을 검토할 수 있다. 반대로 공식 통계에서는 그 문제가 크게 드러나지 않더라도 노동조합과 노동안전보건단체의 활동 과정에서 중대한 위험이나 기존 정책의 사각지대가 확인된다면 별도의 실태조사와 예방대책 마련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노동·시민사회의 참여는 이미 마련된 정책에 의견을 제시하는 수준을 넘어, 지역에서 무엇을 중요한 산업재해 예방의 과제로 다룰 것인지 결정하는 데 참여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지방정부의 예방정책이 행정기관이 파악한 문제에만 집중되지 않고 현장의 다양한 위험과 노동자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과정이다.

3) 예방사업 수행 주체들의 협력과 상호 모니터링

지역의 산업재해 예방정책이 실제 노동현장의 개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정책의 수립뿐만 아니라 예방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관계기관 간 협력과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실제로 안전보건지킴이 활동 과정에서는 다른 기관에서 점검이나 기술지원을 받았음에도 유해·위험요인이 제대로 개선되지 않은 사업장을 확인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지킴이가 개선을 권고한 후 재방문하였음에도 조치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사례는 개별 사업장에 대한 점검과 지원이 이루어졌

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는 예방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실무자들이 서로의 활동 경험과 결과를 공유하고, 필요한 후속 조치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안전보건지킴이의 현장점검 결과를 노동권익센터의 안전보건교육과 연계한다면 일반적인 안전보건수칙을 전달하는 교육에서 나아가 해당 사업장에서 실제 확인된 유해·위험요인을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확인된 위험에 관해 관련 법령과 개선 방법을 설명하고, 필요한 기술·재정 지원사업을 함께 안내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활동은 점검과 교육이라는 서로 다른 사업을 연결하여 기존 예방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안전보건공단과 지방정부의 지킴이, 각종 안전보건 컨설팅과 교육·건강관리 사업의 실무자들이 정기적으로 활동 사례를 공유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각 기관이 어떠한 사업을 수행하였는지 소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확인한 유해·위험요인과 개선 사례, 사업 추진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과 한계 등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다.

이러한 교류는 서로의 활동을 학습하는 동시에 기존 사업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여러 기관의 점검과 지원에도 동일한 위험이 반복적으로 확인된다면 그 원인이 사업장의 개선조치 미이행에 있는지, 개선 방법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것인지, 기존 사업의 운영 방식에 한계가 있는지 등을 함께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논의가 실제 사업의 개선으로 이어진다면 개별 기관의 자체적인 평가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를 파악하고 보완하는 상호 모니터링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논의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와 개선 과제를 정리하고, 필요한 후속 조치와 담당 기관을 검토하며, 이후 조치

결과를 다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물론 이러한 협력이 기존 감독기관의 법적 권한이나 책임을 대신할 수는 없다. 각 기관이 자신의 역할과 권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되, 현장에서 확인된 위험과 개선 과제가 개별 사업의 종료와 함께 단절되지 않도록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4) 노동·시민사회의 실질적인 참여와 정책 평가

지역에서는 이미 노동안전보건 관련 심의·자문위원회와 관계기관 협의체 등 다양한 협력체계가 마련되어 있다. 따라서 새로운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에 앞서 기존 협력체계가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노동·시민사회의 의견이 실제 정책과 사업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역의 산업재해 예방 거버넌스는 정책과 사업의 추진 현황을 공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업의 방향과 우선순위를 함께 논의하고 실행 과정과 결과를 점검하며, 이를 다음 정책에 반영하는 체계로 운영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는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는 방식도 중요하다. 점검 사업장 수와 교육 횟수, 지원 사업장 수 등 정량적인 실적은 사업의 추진 현황을 확인하는 데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 예방사업의 실질적인 효과를 평가하기는 어렵다. 현장에서 확인된 유해·위험요인이 실제 개선되었는지, 개선 이후에도 안전보건조치가 지속되고 있는지, 기존 사업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무엇이었는지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앞서 제안한 예방사업 수행 주체들의 활동 사례 공유와 상호 모니터링 결과가 지역의 협의체와 심의·자문위원회의 정책 논의로 연결될 수 있어야 한다. 실무자들이 현장에서 확인한 문제와 개선 과제를 공유하고, 관계기

관과 노동·시민사회가 함께 검토하여 이후 사업계획과 지원 방식의 개선에 반영하는 것이다.

또한 노동·시민사회의 참여가 이미 수립된 사업계획이나 추진실적에 대한 의견 수렴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정책 수립부터 실행과 평가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참여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협의체의 정례적인 운영, 관련 자료의 공유, 제기된 의견에 대한 검토와 회신, 논의 결과의 후속 조치 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다만 노동·시민사회의 참여가 행정기관의 부족한 인력이나 업무를 대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책임은 지방정부와 관계기관에 있으며, 노동·시민사회는 독립적인 주체로서 현장의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고 정책의 이행과 성과를 감시·평가하며 필요한 개선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결국 지역 산업재해 예방 거버넌스는 다양한 기관과 단체가 참여하는 형식적인 협의체가 아니라, 지역에서 확인되는 위험을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예방사업의 실행 과정과 결과를 함께 검토하며, 이를 다시 정책에 반영하는 체계로 운영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노동·시민사회의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5. 나가며

지역에서는 이미 다양한 주체들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점검과 감독, 컨설팅, 교육, 건강관리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이제는 이러한 활동이 개별적인 사업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 노동현장의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 시작으로 지방정부와 관계기관, 노동·시민사회가 함께 지역의 예방사업 현

황과 현장 활동 사례를 공유하고, 사업 간 연계가 필요한 부분과 개선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이러한 논의가 일회성 교류에 그치지 않고 지역의 예방정책 수립과 실행, 평가에 지속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기존 협력체계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토론

토론 1

류지호 ¦ 의정부 이주노동자지원센터 대표

토론 2

곽이경 ¦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토론 3

김준호 ¦ 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장

토론 1

지방정부 노동감독 시대, 이주노동자 산재예방과 건강권 보장을 위한 과제

류지호 ¦ 의정부이주노동자센터 대표

오늘 두 분의 발제는 지방정부가 기존의 산재예방 지원행정에서 벗어나 직접적인 노동감독의 주체로 역할을 확대하는 시점에서, 지방정부가 어떤 전략과 체계를 갖추어야 하는지를 잘 짚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두 발제의 내용에 대체로 동의하면서, 이주노동자의 산재예방과 건강권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몇 가지 보완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주노동자는 제조업, 건설업뿐만 아니라 농축산업, 어업 등 산업 전반에서 일하고 있으며 특히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런 소규모 사업장은 안전 관리체계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고, 이주노동자는 언어의 장벽도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업장 변경 제한 등의 예속적이고 불안정한 근로관계 및 제도로 인해 위험한 작업환경에 놓여 있어도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즉 이주노동자의 산업재해와 건강 문제를 단순히 안전교육의 부족이나 개인의 부주의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2024년 의정부이주노동자센터를 개소한 첫해, 유독 산재 관련 상담이 많았는데 그중 여전히 안타까운 사례를 소개합니다.

3개월 이상의 산재피해를 입은 노동자였습니다. 먼 지역에서 의정부까지 상담을 왔는데 요양기간이 끝나면 곧 취업활동기간을 연장해야 하는데 사업장에서 연장해 줄 것 같지 않다며 사업장을 변경하고 싶어 했습니다. 사업장과 통화했는데 무슨 이유인지 절대 노동자를 퇴사시키지 않겠다고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결국 관할 고용노동지청 외국인력팀에 민원을 제기했고 진정 후 첫 통화에서도 외국인력팀 담당자의 의견은 긍정적이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고시에 외국인근로자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에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산재가 발생한 경우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얼마 후 외국인력팀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고시에 사용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산재여야 한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이를 입증하라는 요구였습니다. 어이가 없고 지금껏 산재로 인한 사업장변경 상담을 하며 한 번도 없었던 요구에 항의도 했지만, 고시가 그렇다며 강경한 태도였습니다. 결국 사업장변경이 지연되고 사업장에서 보이지 않는 괴롭힘이 심해지자 견디지 못한 노동자는 귀국을 선택했습니다.

얼마 전 농업에서 일하는 미등록노동자가 감전으로 인한 화상피해를 입어 상담을 왔습니다. 이후 병원 산재담당자와 통화했는데 진료 당시 산재라고 하지 않았고 요양신청을 원하면 다시 진료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통화 후 노동자에게 수차례 연락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후 확인하니 사업주가 농업은 산재처리가 안된다며 외부에 알리면 치료비도 주지 않고 출국시키겠다는 협박을 받았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이주노동자는 산재피해를 입고도 퇴사할 자유가 보장되지 않고 사업주에게 밉보이면 취업활동을 연장받을 수 없습니다. 여전히 가장 위험하고 가장 열악하며 가장 소외된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스스로 권리를 주장하거나 예방 체계에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주노동자 산재예방 등에 대한 계획 수립에 있어 제도적인 문제를 충분히 이해하고 고려해야 합니다.

발제에서 지적한 위험작업 거부권과 위험상황 신고권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동의하지만, 교육을 통해 위험한 작업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도 실제 현장에서 그 작업을 거부할 수 없다면 교육의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

에 없습니다. 이주노동자는 위험한 작업을 거부하거나 안전조치를 요구했다가 사업주와 갈등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침묵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이주노동자가 자신의 권리를 이해하고 행사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과 함께 통역이 가능한 상담 시스템을 구축하여 위험작업 거부와 신고가 실제로 가능하도록 상담과 신고, 보호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산재는 상담보다 예방이 더 어려웠습니다. 특히 산재예방 교육은 더 그렇습니다. 산재교육이란 주제로 이주노동자들을 모으는 게 어려워 다른 교육이나 행사 등과 엮어 교육하곤 했습니다. 같은 제조업이라도 실제 하는 업무가 다양하고 국적도 언어도 다양해 기획도 실행도 쉽지 않습니다. 지방정부에서 이주노동자 산재예방 교육을 기획하고 시행할 때 많은 이의 지혜와 경험을 모으고 협력해야 합니다.

이주노동자 산재예방 등 건강권 보장에 있어 지방정부가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하는 중요한 대상은 계절노동자라고 생각합니다. 타 이주노동자 제도와 달리 계절노동자 제도는 도입과 운용, 관리책임이 지방정부에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대부분 30인 미만 사업장이고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의 관리감독이 미치지 못하는 농어업입니다.

올해 계절노동자로 입국한 이주노동자가 10만명을 넘어 고용허가제 신규 입국자보다 많았습니다. 그리고 브로커 개입과 노동착취 인신매매 사례도 지속적으로 밝혀지고 있지만 제도적인 개선은 뒤따르지 못하고 많은 계절노동자는 강제노동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안전문제는 뒷걸음질하고 있습니다. 계절노동자 도입 규모가 크게 증가했지만 초기 산재보험 의무가입이 농업인안전보험으로 대체 가능해지면서 대부분이 이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숙소도 가설건축물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계절노동자 건강권 보장은 개별 농가의 안전관리만 점검해서는 전체적인 안전보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지방정부는 폭염과 한파에 대한 대책, 충분한 휴식시간, 기숙사와 위생시설, 작업장까지의 이동수단, 질병 발생 시 의료기관 이용과 통역 지원 등 생활 전반의 문제와 함께, 계절노동자 도입과 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종합적인 계획과 제도개선 및

관리감독에 임해야 합니다. 노동력을 공급하는 행정과 노동자의 안전을 보호하는 행정이 분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방정부가 지역의 산재예방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과 노동안전보건단체가 참여해야 한다는 제안에도 깊이 공감합니다. 여기에 이주노동자 지원단체도 공식적인 협력 주체로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주노동자 지원단체는 노동자들의 상담과 통역, 법률지원 과정에서 현장의 문제를 가장 가까이에서 접하고 있습니다. 산재가 발생했지만 신고하지 못한 사례, 안전장비가 지급되지 않는 사업장, 위험한 작업을 강요받는 상황, 열악한 기숙사와 건강 문제 등 행정기관이 파악하기 어려운 정보와 사례가 축적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현장 정보는 지방정부가 산재예방의 사각지대를 찾아내고 감독계획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주노동자 지원단체를 단순히 다국어 안전교육이나 통역을 수행하는 사업 위탁기관으로만 활용해서는 안 됩니다. 지역의 산재예방 정책을 수립하는 단계부터 이주노동자 지원단체와 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현장의 위험요인 발굴과 정책 평가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지역 산업안전보건 협의체에 이주노동자 대표와 지원단체의 참여를 제도화하고, 당사자들이 직접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환경도 마련해야 합니다.

이주노동자에 관한 정책을 논의하면서 이주노동자의 목소리가 빠져 있다면 그것은 실질적인 거버넌스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주노동자 요양 신청이나 휴업급여 신청 등 기본적인 산재 상담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런데 산재 예방은 다릅니다.

마지막으로 이주노동자의 질병과 열악한 숙소 환경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산재 상담을 하면서 느끼고 확인한 것 중 하나가 이주노동자는 10년 가까이 또는 그 이상 일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산재는 사고였습니다.

장시간 노동과 야간노동, 반복적인 중량물 취급, 유해화학물질 노출, 폭염과 한파 등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 요소의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도

의료진도 산재로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주노동자의 무수한 돌연사도 이러한 직업성 질병과 연관 지어 판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겨울 비닐하우스 내 가설건축물 내에서 사망한 캄보디아 속헹씨는 결국 산재로 인정받았습니다. 속헹씨의 사망으로 이주노동자 숙소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된 지 6년을 앞두고 있지만 현장은 여전합니다. 언제든 이러한 비극이 되풀이될 수 있습니다.

오늘 두 분의 발제를 들으면서 지방정부의 산재예방 정책이 단순히 새로운 감독 권한을 확보하는 차원이 아니라, 지역의 노동현장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떤 방식으로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것인가의 문제라는 점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방정부 노동감독 시대가 이주노동자에게도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주노동자는 제조업, 건설업 외 농축산어업 등 산업 전반에 걸쳐 필수인력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은 시혜적인 지원이나 복지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자로서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입니다.

지방정부가 이주노동자를 단순한 정책 수혜자가 아니라 지역 노동정책의 당사자로 인정하고, 이주노동자의 목소리를 통해 현장의 위험을 발견하고 개선하는 행정을 펼쳐야 합니다.

이주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산재예방 정책은 결코 완성된 정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지방정부의 새로운 노동감독 체계가 이주노동자를 포함한 지역의 모든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토론 2

지방정부 노동감독 시대, 소규모 사업장 산재예방 과제

곽이경 ¦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1. 들어가며

- 오는 12월 8일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이 시행되고, 2027년부터 30인 미만 사업장 노동감독을 지방정부가 맡는다. 민주노총은 감독이 지방정부로 위임되면 지자체장의 성향이나 지역경제 여론에 영향을 받아 독립성과 전문성을 지킬 수 있을지 우려해 왔다. 아울러 지방 노동행정이 일자리·기업지원 부서의 하위에 있고 전담조직이 제대로 구성되지 않은 곳도 많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내건 지자체가 감독권을 온전히 행사할지도 의문이다. 메가특구 등 지역 살리기를 명분으로 노동 개악이 추진되는 가운데 같은 지방정부가 감독 주체가 되는 모순도 있다.
- 법 시행을 앞둔 지금은 이러한 관점을 유지하면서, 그간의 우려 지점을 보완해 감독권 위임이 실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준비하는 것 또한 과제다.
- 감독권 위임은 단순히 권한을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산재예방과 감독의 책임을 두텁게 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지방 감독이 지원행정에 흡수되지 않도록 강제력을 지키고, 노동자 참여를 계획·감독·평가 전 과정에서 권한으로 제도화해야 한다.

2. 일회성 지원에서 지속성 있는 체계 구축으로 - 산업단지, 작은사업장 산재 예방

- 산업단지 입주기업 12만9,113개 중 96.2%가 50인 미만 사업장이다(산업단지공단, 2025년 1분기). 산단 사업장의 96.2%에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다는 뜻이다. 전국 1,360여 개 산단 중 산업단지공단이 위탁 관리하는 곳은 84개 뿐이다. 나머지 93%는 지자체에 관리 의무가 있지만 사실상 방치돼 있다.
- 산업재해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집중 발생해 왔다. 그동안 중소기업 안전보건은 기업의 부담 능력을 이유로 '정부의 시혜성 지원사업' 위주로만 추진되었고, 특히 영세 기업은 창업과 폐업의 반복, 잦은 퇴직과 이직으로 일회성 사업으로는 효과를 보기 어려웠다. 1조원대 예방 사업이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이유다.
- 작은 사업장 산재예방을 위해서는 지속성 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공동안전관리자,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외 명산감 출입권 확보 등) 구축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지방정부의 감독과 지원도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
- 민주노총은 중소기업 산재 감소 대책으로 △원청 책임 강화 △산업단지 공동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선임기준 완화 등 법제도 개선을 제시해 왔다. 특히 중소기업이 밀집된 산업단지에는 공동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규모에 따라 적용을 제외하고 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전면 적용하도록 하고, 공단에서 공동안전보건관리자 선임과 체계 구축을 지원해야 한다. 지방정부 차원의 정책만으로는 법의 사각지대를 넘어서기 어렵다.

3. 산업단지 공동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연계하는 지방정부 감독과 지원

○ 현행 사업의 한계와 지방정부의 산재예방 책무

- 현재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은 시범사업이며, 사용자단체가 채용·운영하

는 구조여서 노조나 노동단체가 참여하기 어렵다. 2026년 예산은 126억원에서 38.8억원으로 줄었다. 안전보건공단 지킴이와 지자체 안전지킴이의 점검 활동이 노동부 감독과 연계되지 않는다는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경사노위가 최근 공동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을 20인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일부나마 선임 의무를 확대한 것은 의미가 있으나 한계는 여전하다. 독일은 규모와 관계없이 위험도에 따라 노동자 1인당 연간 안전관리 시간을 정한다. 기준을 규모에서 위험도로 바꿔야 한다.
- 산안법의 지자체 산재예방 책무, 화학물질관리법의 관내 화학사고 대응 책무, 산업집적법의 관리기관 입주기업 안전관리계획 수립·지도 책무 등 여러 법이 지방정부의 산재예방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지방산단은 지자체가 관리권자이거나 관리권을 위임받은 경우가 많다.
- 위임 대상인 30인 미만 사업장은 노조 조직률이 매우 낮다. 법제도 개선과 지원·감독이 함께 이루어져야 실질적인 예방이 가능하다. 지자체 안에 노동감독·노동정책 전담 부서를 두고, 작은 사업장 예방감독 계획 수립에 노동조합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지방정부가 위탁과 지원 위주에서 직접 실시하고 책임지는 역할로 바뀌는 지금이 제도화의 적기다.

○ 공동 안전·보건관리자

- 중소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려면 우선 전 사업장에 선임 의무를 부여하고, 복수의 기업이 공동으로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를 선임해 안전보건활동을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작은 사업장에서의 안전보건관리자 공동 선임은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산업단지공단에 공동안전보건관리자 제도를 두어 산단 관리기관이 채용하고, 입주기업은 일정 비용을, 정부는 예방기금으로 인건비를 부담하는 방식이다. 이를 공단 입주 조건과 연계해 제도화한다.
- 공공성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노동자 참여 구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지역·업종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외 명산감, 지킴이 등이 그것이다.
- 음식숙박업·서비스업의 경우, 지자체가 지원하는 시장이나 OO거리 등의 형태로 밀집된 곳에는 산업단지와 같은 방식의 공동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

는 것도 방법이다.

○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명산감**

- 산보위 설치 기준을 전 사업장으로 넓히고 지역·업종·산단별 공동 산보위를 제도화한다. 사내 명산감은 규모 기준이 없어져 제도가 확대됐지만, 사외 명산감은 여전히 현장 출입권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 산단부터 공동으로 명산감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여 출입권을 보장해야 한다.

○ **노동환경 개선**

- 거점 휴게실, 공용 작업복 세탁소, 응급구조, 건강관리체계를 산단 안에 둔다.

4. 민주노총 지역본부 지자체 대응 활동

(1) 민주노총 지역본부의 지자체 대응 활동

- 민주노총 지역본부는 지역을 기반으로 다양한 산재예방사업과 중대재해 대응사업 등을 진행해 왔다. 이미 지역에서는 조례, 지킴이 활동, 교섭 등을 통해 개입한 사례가 축적되어 왔다. 주민청원 등의 방식으로 산재예방 지원조례를 제정하거나, 지자체 안전지킴이 활동에 지역본부가 추천한 명산감이나 노안 간부가 참여하고 있다.
- 지역 중대재해 대응에서도 지역본부의 역할이 크다. 지자체와 공동으로 사고조사를 진행했고(부천 공무원 자살, 충남 한화토탈 화학사고 등), 이주노동자 중대재해 대응의 중요성도 최근 더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미조직 노동자의 중대재해에 대응하고, 한익스프레스, 광주 학동 참사 유족 지원 등의 사례도 있다.
- 산업단지와 관련한 활동도 이어 왔다. 인천·부천 산단의 메탄올 중독 사건에서는 불법파견 실태조사와 직접고용 투쟁을 벌였다. 또한 공동 작업복 세탁소와 휴게실 설치를 요구했고, 산단 공동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그 밖에 감정노동 보호 조례 활동과 센터 자문위원회 참여, 지자체 노정교섭

에서의 기본계획 논의, 근로자건강센터, 광역 중대재해예방센터, 질병판정위원회 대응 등으로 개입의 폭을 넓혀 왔다.

- 지자체의 권한을 활용하는 경우로는 지자체가 사용자, 위탁자인 청소・폐기물・상하수도・공원 노동자의 문제를 제기하거나, 특고플랫폼노동자 쉼터 설치, 기후재난 예산(재난안전법) 등을 제안해왔다.

(2) 한계

- 재량에 따라 달라지는 형식적 거버넌스 : 인천 노동안전보건자문위원회는 실질적 정책 개입이 어렵다 / 지역 명산감협의회 활성화가 안되고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는 구조도 아니다 / 노동부 지역 산재예방 거버넌스에 노동계의 상설 참여 구조가 없다. / 부산본부는 2021년 서부산 도금사업장 실태조사 뒤 지역(업종) 산보위를 요구했으나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거부됐다.
- 감독과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 점검활동 : 각 지역본부가 참여하는 안전지킴이가 위험을 발견해도 행정보고로 끝나고 감독이나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그간 지자체 정책을 기업 자율예방에 맡겨왔기 때문이다.
- 단체장에 따라 흔들리는 정책 : 서울은 산재예방 지원조례 제정 후 노동안전보건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나 지자체 장이 바뀌며 조직과 계획 모두 축소되었다.
- 이러한 노동조합의 지자체 대응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지방정부가 산재예방의 책임 주체로 서야 할 필요성과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지방정부는 기존에 쌓아온 사례를 참고하여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야 한다.

(3) 방향

- 민주노총은 지역별 안전지킴이, 공동안전관리자 등 작은 사업장 예방 활동의 주체를 발굴하고 체계를 구축하는 일을 중장기 전망 아래 사업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다. 법제도 개선과 현장 사업을 병행하고, 근로자건강센터, 전문가, 건강권단체와 결합하는 것도 필요하다. 노동조합 조직 바깥 노동자의 안전을

강화하는 데 이러한 사업 방향은 필수적이므로, 향후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본다.

5. 노동자를 예방 활동 수행 주체이자 감시평가 주체로

- 노동·시민사회를 예방활동의 수행 주체이자 감시·평가 주체로 보고, 이들의 실질적 참여와 상호 모니터링, 감독과 지원의 연계를 추진해야 한다는 발제자의 관점은 타당하고 필요하다. 계획을 수립하는 거버넌스도 중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한 전제로 감독 고유의 기능을 약화하지 않으면서 지원행정과 감독행정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자는 주장은 핵심적이다.
- 노동자 참여는 제도로 명시되어야 안정화될 수 있다. 정부의 감독계획을 보면 위임 대상을 지역노동감독협의회에서 2배수로 후보 선정하고 전국협의회에서 확정한다. 두 협의회 모두 행정기관만으로 구성되고, 노사 참여는 '개방적으로 운영' 한다는 문구뿐이다. 감독계획 심의, 감독 요청, 중대재해 공동조사 등에서 노동의 참여를 법령과 제도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 모니터링을 감독으로 연계해야 한다. 안전보건공단 지킴이, 지자체 지킴이, 명산감, 공동안전관리자, 컨설팅 인력 등 현장 점검을 하는 주체들의 현황이 공유되는 구조 또한 필요하다. 지자체 안전지킴이는 공공 발주 현장만 점검하는 경우가 많다. 점검과 개선 요구 후 미개선 시 패트롤 점검으로 연계하는 경우는 있다. 정부와 안전보건공단이 진행하는 '안전한 일터 지킴이' 는 미개선 시 노동부에 감독을 요청하는 단계가 있다. 지자체 지킴이도 같은 경로로 지방 감독과 연계할 수 있다.
- 지자체가 사용자 또는 발주자인 사업장은 노동부 공동감독이나 지킴이·명산감 등 노동자 참여 점검을 원칙으로 하여 독립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 경기도에서 도가 발주한 30억원 미만 현장 우선 감독하겠다는 계획은 긍정적이나 위와 같은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 그러려면 수행 주체의 위탁·단기 구조부터 바꿔야 한다. 또 하나 중요한 과제는 유명무실한 사외 명산감 제도를 개선하여 현장 출입권(감독 시 동행하는 것을 포함)을 보장하는 것이다.

6. 계획을 세우는 거버넌스, 길목을 다양하게

○ 발제자의 <목표-길목-수단-근거>로 이어지는 전략과 기존 행정권한을 길목으로 삼자는 의견에 동의한다. 산재예방의 '길목'을 넓히고 다양하게 만들기 위한 논의가 활발해지길 바라며, 산업단지 공동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도 중요한 과제다.

- 인허가·보조금을 길목으로 쓰는 방안은 의미가 있다. 다만 지원행정이 감독보다 우선해서는 안 된다. 또한 사각지대를 유념할 필요도 있다. 30인 미만 하청은 지방이, 원청은 노동부가 감독하면 원청 책임이 빠진다. 경남 고성 양식장 중대재해로 3명이 사망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등록되어 있었다. 이는 여러 지역에 사업장을 쪼개 운영한 사례다. 원하청·쪼개기 의심 사업장은 중앙과 지방의 공동감독이 필요하다.
- 산업단지와 노동자 조직도 길목으로 접근해 볼 수 있겠다. 지방정부는 산업집적법상 관리기관 권한을 활용해 지방 감독계획과 산단 공동안전보건관리체계를 묶어서 고민할 수 있다. 노동조합과 노동상담소의 상담 제보도 행정자료 만으로 충족되지 않는 중요한 길목이다. 경기도는 노동계와 협력 방안으로 민주노총 상담 데이터 활용을 제안한 바 있다.

○ 거버넌스 구축을 뒷받침할 시스템이 필요하다. 기존 사례는 거버넌스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이제는 거버넌스 구축을 지자체 재량에 맡길 것이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 안전보건공단 안전한 일터 지킴이, 지자체 지킴이, 지역 명산감협의회, 공동안전관리자, 안전보건컨설팅 실무자 등 정부나 지자체 지원을 받는 인력 사이에 상호 모니터링과 합동 점검을 실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제기된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는 절차가 생긴다면,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지역 명산감협의회를 활성화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 전담부서 설치, 위임사무를 수행하는 감독관에 대한 국비 지원, 감독관의 경험이 쌓이고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신분 보장, 지역 규모별 통계 데이터 확보 등은 발제문에서 지적한 대로 선결되어야 할 부분이다.

7. 맺으며

- 지방정부의 산재예방 책임을 실질화하기 위한 과제를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다. 위임 대상인 30인 미만 사업장은 노조 조직률이 매우 낮아 법 제도 개선·지원·감독이 함께 가며 실질적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 지역 노정협의에 감독계획 및 산재예방 기본계획을 정식 의제로 포함하여 함께 계획해야 한다.
- 감독 대상 선정 시 노동상담과 현장 제보 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현장 점검은 즉각적인 감독과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 위험을 발견해도 행정보고로 끝나던 지킴이 점검의 한계를 개선하여 지킴이 명산감 공동안전관리자의 합동점검과 정기적 사례 공유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 재해예방을 위한 가장 필수적인 요소인 노동자 참여를 위해 사업장 단위를 넘어 지역별·업종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중소사업장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의 공동안전보건관리자 선임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재해예방에 실질적 효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노동자 참여는 보조적 장치가 아니라 감독의 독립성과 통일성을 보완하고 현장의 위험을 효과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중요한 방법이다. 공동안전관리자, 지킴이 사업에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참여를 확대하면서, 사외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출입권 보장, 지역명산감협의회 강화 등 법과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 지역에서 지자체를 대상으로 법을 뛰어넘는 작은사업장 노동안전보건정책을 만들어 내기에는 한계가 있다. 법·제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5인 미만, 특고·플랫폼 등 소규모 사업장에도 기본적인 안전보건의무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고, 예외 없는 적용 및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토론 3

고용노동부

김준호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장

메모

메모